
2022 한국 - 베트남 반부패 MOU 협력 이행 출장 결과

2022. 11.



국제교류담당관실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출장 개요	1
----------------	---

II. 주요 활동결과

1.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2
----------------------------	---

2. 국민권익위-중앙내무위 반부패 MOU 협력회의	5
-----------------------------------	---

가. MOU 연장서한 교환 등 환담	6
---------------------------	---

나. 한-베트남 반부패 정책 현황 공유	9
-----------------------------	---

3. 국민권익위-감찰원 반부패 협력회의	22
-----------------------------	----

4. 하남성 지방내무위 방문 및 반부패 자문	33
--------------------------------	----

III. 평가 및 향후 계획	41
-----------------------	----

I 출장 개요

□ 배 경

- '22년은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이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IPEF) 참가국인 베트남과의 협력 필요성 더욱 강화
- 위원회와 가장 오랜 협력관계인 베트남 중앙내무위와의 지속적인 반부패 협력 활동 추진을 위해 MOU 연장 서한 교환 추진
 - *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와 반부패 MOU 최초 체결('10.2.3.) 이후 2년마다 갱신중이며, '22.10.29. 기간 만료로 6차 연장 실시

□ 출장 개요

- 기간 : '22.11.8.(화)~11.(금), 3박 4일
- 장소 : 베트남 하노이(중앙내무위, 검찰원 소재), 하남성(중앙내무위 지부)
- 출장단 구성 : 부패방지국장, 이진희 서기관, 조수연 사무관, 한은실 주무관

□ 주요 활동

- 권익위-중앙내무위 반부패 MOU 갱신 및 향후 협력계획 논의
- 베트남 중앙내무위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반부패 정책 현황 공유 및 베트남 검찰원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 현황 등 공유

□ 출장 일정

일 자	시 간	업무 수행 내용
11.8.(화)	10:35	○ 인천(10:35) → 하노이(13:30)
	16:00~17:00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베트남 대사 환담
11.9.(수)	9:00~11:30	○ 권익위-중앙내무위 반부패 MOU 협력회의 - 반부패 MOU 연장서한 교환 및 향후 이행사항 논의 - 한국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양국 반부패 활동 공유
	14:00~16:00	○ 권익위-검찰원 반부패 협력회의 - 한국의 종합청렴도 시행, 검찰원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행 경과 공유
11.10.(목)	10:00~16:00	○ 중앙내무위 하남성 지부 방문 및 반부패 정책 자문 - 하남성 지방내무위원회 위원장 면담 및 양 기관 반부패 활동 공유
11.11.(금)	10:40	○ 하노이(10:40) → 인천(16:30)

II 주요 활동 결과

1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 배 경

- 국민권익위는 매월 재외공관 등에 영문 뉴스레터를 제작·발송하여 위원회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이나 활동을 국제사회에 홍보중
-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해외기관·국내외 기업인 등을 주요 정책 고객으로 하는 재외공관과의 방문 협력 강화 추진
- '22년은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이며, IPEF 참가국인 베트남과의 협력 필요성이 강화되는 때에 현지출장을 계기로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과의 국제홍보 방문 협의 요청

□ 방문 개요

- 일시·장소 : '22. 11. 8.(화) 16:00~17:00,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 목 적 : 대한민국 반부패 백서 등 반부패 자료 교환 및 재외공관 협조를 통한 국제홍보 방안 협의
- 환 답 : 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주베트남대사관 오영주 대사

□ 위원회 대표단 주요말씀 (부패방지국장)

-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된 국가로 평가되어 국민권익위는 베트남뿐 아니라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수의 동남아 국가들과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청렴교육 등 반부패 제도를 활발히 공유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협력활동을 진행하였으나, 이번 베트남 중앙내무위, 검찰원, 하남성 지방내무위 방문을 통해 베트남과의 반부패 MOU 연장 및 반부패 협력회의를 진행하고자 함

□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측 주요말씀 (오영주 대사)

- 대사로 부임하고 보니 한국에서 보통 베트남을 개도국의 위치로 인식하는 데 반해, 그것을 뛰어넘는 베트남의 잠재력을 느끼고 있음
 - 베트남은 대국을 상대로 전승한 국가라는 자긍심, 정치·경제 등 독특한 시스템 및 한국에는 20여만명, 일본은 50여만명의 베트남인들이 활발히 국제사회에 진출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아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임
- 또한, 한국의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베트남과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등 베트남은 한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임
 - 올해 베트남은 미국·중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이며 제1위 흑자국을 달성하는 등 경제적으로 활발히 교류하고 있으며,
 - 매우 근면한 국민성, 한자 유교 문화, 가족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등 한국과 유사한 문화도 굉장히 많음
- 개인적으로 업무차 서울청사에 위치한 권익위 정부합동센터를 방문했었던 경험 등 권익위의 활동을 익히 들어오고 있었음
- 최근 베트남은 강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반부패 정책을 추진중에 있어 부패사건 처리 등 반부패 이슈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음
 - 이번 베트남 방문을 환영드리며, 베트남 반부패 관계부처와의 협력회의를 통해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 홍보 등 훌륭한 외교 성과를 내시기를 기원함

□ 활동 모습

오영주 베트남 대사 -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간 환담 모습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및 권익위 대표단 기념사진 촬영



2

국민권익위-중앙내무위 반부패 MOU 협력회의

□ 일 시 : '22. 11. 9.(수) 9:00~11:30

□ 장 소 :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청사

□ 참 석

○ (우리측) 부패방지국장, 이진희 서기관, 조수연 사무관, 한은실 주무관, 현지통역사

○ (베트남측) 응유엔 타이 혹 중앙내무위 부위원장 등 중앙내무위 관계자 10인

□ 목 적

○ 한국 국민권익위 및 베트남 중앙내무위 간 반부패 MOU 연장서한 교환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 2022년 양국의 반부패 정책 현황 공유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1.9. (수)	09:00-09:15 (15분)	양 기관 대표 인사말씀	부패방지국장
	09:15-09:30 (15분)	MOU 연장서한 교환	(*사진촬영)
	09:30-10:10 (40분)	이해충돌방지법 등 2022년 한국 반부패 정책 성과와 방향	조수연 사무관
	10:10-10:20 (10분)	질의응답	
	10:20-10:30 (10분)	휴식	
	10:30-11:10 (40분)	2022년 베트남 반부패 활동	중앙내무위
	11:10-11:30 (20분)	향후 협력방안 논의	이진희 서기관
	11:30-13:00 (90분)	오찬	
	13:00-14:00 (60분)	중앙내무위 → 검찰원 이동	

※ 한-베트남어 순차 통역

가. MOU 연장서한 교환 등 환담

□ 위원회 대표단 주요말씀 (부패방지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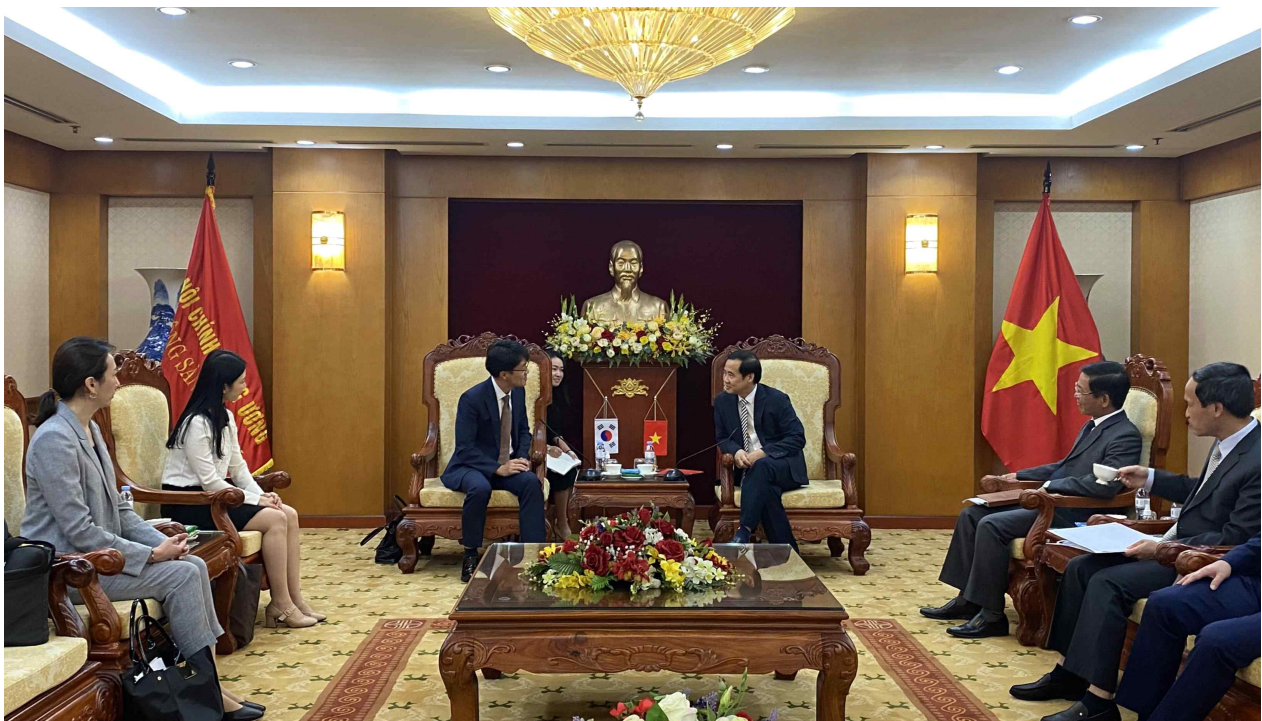
-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주시고 협력회의를 준비해 주신 중앙내무위 응유엔 타이 혹 부위원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개인적으로 한-베트남 반부패 MOU 체결 초기인 2011년 베트남 출장 이후 약 10년 만의 두 번째 베트남 방문이라 매우 뜻깊고,
 - 십여 년 전과 비교할 때 하노이가 매우 발전하고 있는 모습, 이른 아침부터 운동과 출근을 하는 베트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매우 활기찬 인상을 받았음
- 2010년 국민권익위와 베트남 중앙내무위는 반부패 MOU 체결 이후 다양한 협력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음
 - 권익위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법, 제도 사항을 공유해왔음
- 베트남과 한국의 정책 시행 환경이 동일하지 않으나, 한국에서 시행 중인 반부패 제도를 소개하고, 베트남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경험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다 보면 양 기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함
- 한국은 올해 5월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후 협력회의 시간에 그 내용을 공유할 예정임
- 이번 협력회의를 통해 권익위와 중앙내무위, 더 나아가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돈독해지기를 기원하며,
 - 내년에는 중앙내무위 부위원장님께서 한국에 방문하시는 등 양 기관이 더욱 활발히 협력하기를 기원함

□ 베트남 중앙내무위 부위원장 주요말씀 (Nguyen Thai Hoc 부위원장)

- 베트남에 방문해주신 대표단 여러분 모두에게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껏 한국에 베트남 출장단이 갈 때마다 권익위의 따뜻한 환대와 반부패 관련 많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번 베트남에서의 반부패 협력은 중앙내무위, 지방내무위 및 검찰원과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앙내무위와 마찬가지로 검찰원도 부패방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짧은 기간 동안 베트남의 다양한 반부패 기관을 방문하시는 일정 중에 상호 기관 간 성공적인 협력 성과를 기대하며,
 - 더 나아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협력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 양 국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기원함

□ 활동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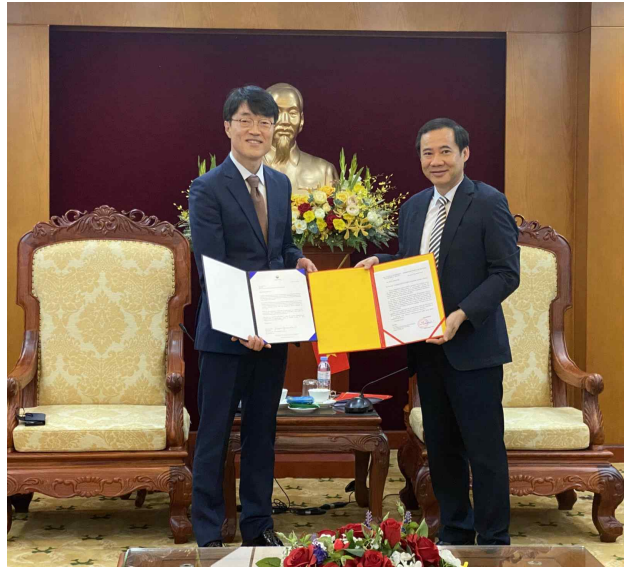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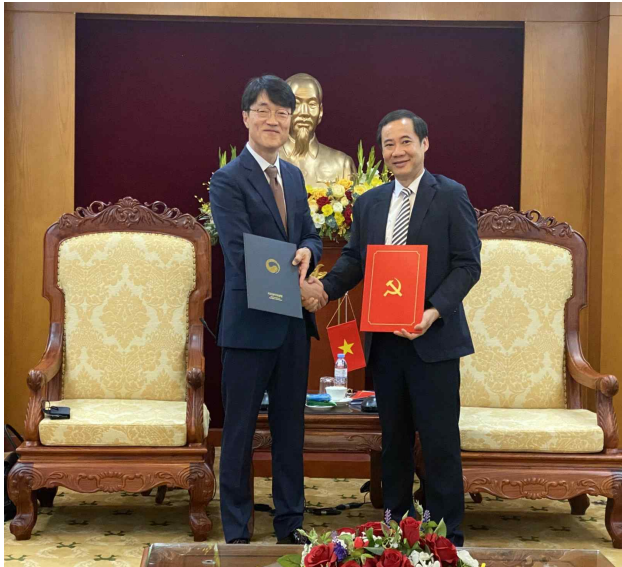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 중앙내무위 응유엔 타이 혹 부위원장 간 환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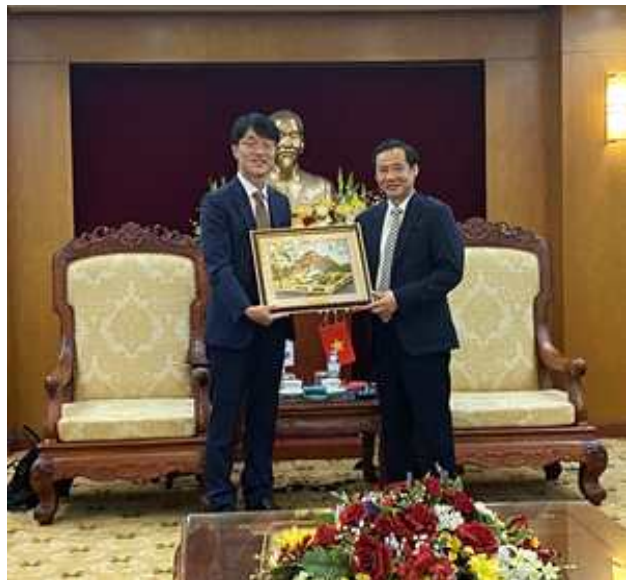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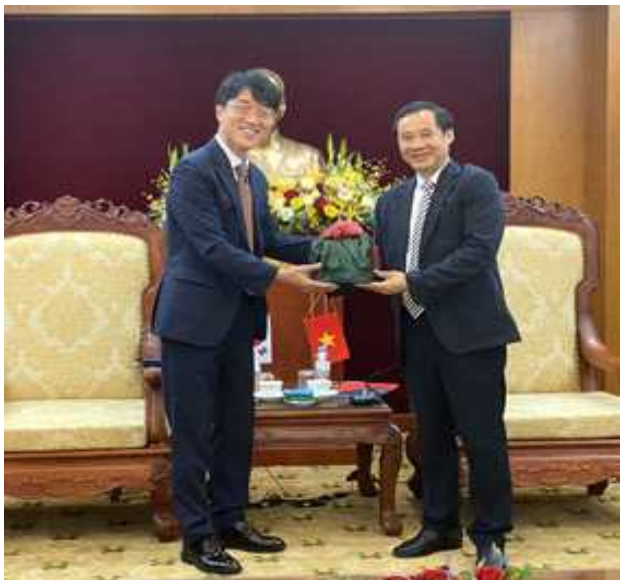
중앙내무위 및 국민권익위 대표단 기념사진 촬영



양 기관 MOU 연장서한 교환



양 기관 기념품 교환



나. 한-베트남 반부패 정책 현황 공유

1. 한국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사항 공유 (권익위 조수연 사무관)

- 이해충돌방지법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인 기존의 반부패 법령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의의와 제정배경, 입법 경과를 말씀드리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반부패 총괄기관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다섯 개의 반부패 법률과 한 개의 대통령령을 운영하고 있음
 - 먼저 공무원 행동강령은 2003년에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공직자가 직무수행을 하면서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담고 있고, 각급 공공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음
 - 2008년에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국민권익위가 하는 일을 정한 법률로서, 특히 부패신고와 처리, 부패신고자의 보호와 보상 등 부패발생을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한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률로서, 안심하고 공익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서 궁극적으로는 공익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법률임
 - 2016년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각급 학교의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법률인데, 이들 공직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임

- 2020년에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나랏돈을 부정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이익은 환수하도록 하고 있는, 공공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
- 지금까지 설명드린 법령 중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규정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들 법률에는 관련 내용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거나 구체적인 이해충돌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을 구체적이고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우리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이해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음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바로 이해충돌방지법이며, 이해충돌방지 제도가 잘 작동되면 공직자는 갈등하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수행하고, 국민들은 공직자가 청렴하게 직무수행을 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게 될 것임
- 대한민국의 맥락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배경**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도 뇌물이나 부정청탁같은 전통적인 부패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제도는 운영되고 있었으나,
 - 최근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나 가족이 채용되도록 특혜를 주는 등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패사건들이 지속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부패를 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음
- 사실 이해충돌방지법에 포함된 공직자의 행위기준 중 많은 부분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공무원 행동강령은 행정부에만 적용되고, 위반 시 제재도 징계에 그칠 뿐 아니라, 이해충돌

소지가 많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음

- 1962년 제도를 완비한 미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OECD 가입국들의 경우 최소 2000년대 초반까지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마련했다는 국제적 환경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
-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청탁금지법이 처음 마련되었을 때, 이해충돌방지 제도도 포함되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 제도는 제외된 채 법이 만들어졌음
- 이후 공무원 행동강령에 우선 반영해서 제도적으로 운영하면서 법률로 만들려는 계속된 노력에도 큰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 지난해 2021년 3월, 대한민국의 주요 공기업중 하나인 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들이 직무수행중에 얻은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투기를 하는데 사용한 사건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 이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러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처음 입법이 시도된 이후 9년 만에 법이 만들어졌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5월 19일 법이 시행되었음
- 이렇게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여기서 공공기관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교육청, 국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1만 5천여개 기관**을 포함하고, 공직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임직원 등으로 **약 2백만 명**에 달함
-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10가지 행위기준은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5개의 신고, 제출의무**와, 절대해서는 안 될 **5개의 제한, 금지행위**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반드시 해야 할 5개의 의무부터 설명드리면,

- 1) 공직자는 자신의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해 직무수행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을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해야 하고, 여기서 사적 이해관계자에는 본인과 가족,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자신이 예전에 다녔던 직장, 퇴직한 상급자 등이 포함됨
- 2)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은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구역 안에 자신이나 가족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매수하게 되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 3)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고위공직자에 임용되기 전 3년간 민간 부문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면 임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그 내역을 제출해야 함
- 4)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 상대방이 자신이나 가족과 금전거래, 부동산거래, 계약체결 등을 한 사실이 있으면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5)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 상대방이 그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사람일 때, 그 사람과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가거나 사행성 오락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 여기서부터는 공직자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함

- 1)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며,
- 2) 공공기관은 기관의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해서는 안 되고,
- 3)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의 가족이나 가족의 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됨
- 4) 또한, 공직자는 공공기관의 차량이나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 5)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해서**는 안 됨
- 공직자가 10가지 행위기준을 위반하면 징계 대상이 되고,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를 위반한 공직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얻은 재산상 이익은 몰수됨
 - 또한 가족채용 제한이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5가지를 위반하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됨
 -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해당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에 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나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고,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법에 따른 보호와 보상, 포상을 받을 수 있고, 법에 정해진 신고자 보호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징계처분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UN과 OECD 등 국제기구들도 공직사회의 부패에 대해서 사후 통제적인 접근에서 사전 예방적인 접근으로 전환한지 오래이며, 대한민국 역시 이 법의 시행으로 공공기관이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가 사전적으로 예방될 것이라고 기대함
 - 또 자신의 직무를 이용한 사익추구의 가능성이 더 넓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사각지대였던 자들, 즉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의 선출직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직 공무원들의 사익추구 행위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판단됨
 -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정착하면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청렴수준도 한단계 높아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공직사회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질의응답

(중앙내무위 사법개혁국 국장)

1. 한국에서는 '이해충돌' 개념이 매우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사항이 매우 인상 깊었음. 베트남 지도부에서도 부패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인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하여 매우 관심이 높음
2. 베트남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개별 제정된 사항은 없으나, 베트남의 '부정부패방지법 8조' 안에 이해충돌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베트남의 '이해충돌 상황' 정의도 한국과 비슷하게 공직자, 공직자의 가족이 직무와 사익 간의 갈등이 있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 2019년 정부에서 발행한 베트남의 59호 의정서 제29조에서도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한국에서의 10개의 행위기준과 유사한 9가지 금지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가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개인 기업 설립 금지, 공직자의 사익 추구 위한 직무권한 남용 금지, 직무관련 비밀정보 이용 금지, 가족 채용 금지 등 9개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외에도 제30조 신고처리와 관련한 사항, 제32조 이해충돌 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사항, 제33, 34조는 징계 및 처벌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베트남 공직자 법 및 형법에 처벌이 규정되어 있음
3. 베트남은 아직 이해충돌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령이 없으나, 이해충돌 방지법은 특히 사익추구로 인한 부패발생 억제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므로 앞으로 베트남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함

(중앙내무위 부정부패방지국 부국장)

- Q1.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공직자들은 새로이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그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본인뿐 아니라 가족, 직계 존·비속까지 넓은 대상을 규정하게 된 배경은?
- 직무관래자 거래신고의 경우에도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비속까지 적용 대상으로 범위를 규정하게 된 배경은?

A1.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거나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공직자는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또는 2) 본인 및 배우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그 적용 범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매우 많았음. 만일 적용하는 '가족'의 범위가 넓으면 법 집행은 강하게 할 수 있으나, 관리가 어려워 효율적이지 못할 것임

- 따라서 법 제정의 취지와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신고·제출 의무의 적용범위로 확정되었음

Q2. 사적접촉 신고 의무를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지인인 퇴직 공직자를 간단하게 만나는 것도 금지된 사항인지?

A2. 말씀하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항목의 의무는 1) 직무관련 소속기관 출신의 2) 퇴직한 지 2년 내의 퇴직자와 3)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임

(중앙내무위 연구총괄국 국장)

Q3. 판사, 검찰도 이해충돌방지법 대상이 되는지?

A3. 한국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각급 국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 등의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로서 말씀하신 판사, 검찰도 적용 대상임

2. 베트남의 반부패 정책 현황 공유 (중앙내무위 Ta Van Giang 연구총괄국장)

○ 제13대 공산당이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반부패 정책 경과에 대해 ① 반부패 정책 추진 결과 및 ② 향후 반부패 업무의 핵심과제로 나눠 말씀드리고자 함

○ 반부패 정책추진 결과는 크게 다음의 6가지 내용으로서,

- 1)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의 지도권한 강화** : ‘13년 2월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총리 산하에서 공산당 산하 기구로 변경된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이하 중앙지도위)는 베트남의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공산당 서기장이 중앙지도위 위원장을, 중앙내무위원회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중앙지도위 구성원은 각 부처의 고위공직자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내무위원회는 중앙지도위의 지도 하에 있음

‘21년 9월 중대사건 신속처리 등 기능이 추가되어 반부패 정책 전반뿐 아니라, ‘21년 말부터 공직자의 행동강령 운영 등 구체적인 부정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2년 5월에는 전국 63개 성에 지방운영위원회가 설립됨

베트남은 중앙당 일당체제로서 모든 권력 관리 업무에 관련한 법령개정 등은 중앙당(공산당)에서 결정·관리중이며, 베트남 공직자는 대부분 공산당원으로서 공산당의 관리를 받고 있음

- 2) **반부정부패 제도의 완성 및 개선** : UN 반부패협약에 따라 기관 조직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공직자의 행동강령 강화, 부정부패 방지 위한 조직 개혁 등 반부패 제도를 개선, 완성해 나가고 있음

구체적으로 베트남 공직자는 3~5년에 1번씩 인사조정을 시행 중이며, ‘21년부터 약 8만 명의 공직자 인사조정이 있었고, 약 1백만 명의 베트남 공직자에게 자산신고를 하도록 하였음

대민업무 소요시간 감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부패자산 은닉수단이 될 수 있는 현금 사용 비율을 줄이는 등 사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중임

- 3) **부정부패 방지 대책 시행(이해충돌방지 규정 포함)** : 각 기관에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문서를 발행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서 ① 공공투자법, 입찰법 등 경제체제 관리 분야, ② 형사처벌법 개정 등 부정부패 적발 및 처리에 관한 분야임

이 법안을 기반으로 각 기관에서 시행규칙 마련하도록 하여, 약 2만 1천개의 문서가 발행되었고, 약 4천 1백개 문서가 개정되는 등 반부패정책 대책을 구체화하여 실시하도록 함

- 4) **부패 적발 및 처리(감사, 조사, 처벌 관련 규정)** : 베트남의 공직자 대부분이 당원 신분이기에 당의 감사·관리 업무는 매우 중요하고, 베트남 공직자는 공산당 및 각 소속부처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국가감사원에서도 조사 및 감사업무를 수행함

약 3만 3천명이상의 당원이 부패 관련 징계를 받았고, 최근 2년 내 약 40명의 장·차관을 기소, 처벌하는 등 고위공직자 관리에 집중하고 있음

- 5) **반부패 분야에서 사회의 역할과 책임 강화** : 베트남에서는 언론사를 통해 조사기관, 수사기관에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반부패 정책 시행에서 언론기관, 기업 등 민간분야에서도 반부패 책임을 확산하고 있음

- 6) **반부패 국제협력** : 베트남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반부패 협력을 지속 강화중에 있으며, 특히 한국은 경제 개발뿐 아니라 반부패 제도 개선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이고, 권익위가 공유한 반부패 정책 등이 많은 도움이 된 바 있음

○ **향후 반부패 업무 핵심과제는 크게 다음의 6가지 내용으로서,**

- 1) **공직자 청렴 문화 구축** : 한국에서는 청렴교육 등 청렴 문화 구축을 위한 정책을 활발히 시행중이라고 들었고, 베트남도 공공기관의 청렴문화 구축에 집중하고 있음

- 2) **반부패 제도 지속 완비 및 실시** : 급속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부패 잠재 요인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은 지속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모든 반부패 법률 개정 등에 있어 UN반부패협약 사항을 준수하며 추진하고 있고, 권익위에서 이번 회의에서 공유한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참고하도록 하겠음

- 3) 부정부패 방지 정책 지속 추진 : 부패 사후관리에 머물지 않고 자산 신고, 행정개혁 등 부패 예방 차원에 집중한 정책 지속 추진
- 4) 부정부패 적발 및 처리 : 지금까지 중앙의 고위공직자의 행위 적발 및 처리에 집중하였으나, 앞으로 지방정부의 공직자까지 확대하여 관리할 것이며, 중앙 및 63개 성 지방정부를 동시 관리할 수 있도록 각 지방운영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음
- 5) 반부패 기관의 역량 강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현재 베트남에서는 반부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수이므로 중앙내무위에서는 가능한 하나의 기관에서 반부패 업무를 전담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임
- 6) 지속적인 반부패 분야에서 사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

■ 질의응답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1. 베트남에서 당 서기장이 위원장으로, 중앙내무위 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하여 운영되는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와 같이,
 - 한국에서도 대통령이 의장으로, 국민권익위원장이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가동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그 내용을 각급기관에 전달하여 기관별 추진과제를 관리하였고, 이 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였음
2. '21년 이후 중앙지도위의 기능이 강화되고, 반부패 정책·제도·법 등이 짧은 시간 내에 갖춰질 수 있도록 강력한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보임
3. 향후 정책방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공공부문에서 민간으로, 국내에서 국제협력까지 이어지는 프로세스는 어느 국가나 따라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함
4. 언급하신 6개의 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반부패 개혁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으시기를 기원함
5. 중앙부처의 고위공직자 40여명의 장·차관이 기소·처벌되었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는데, 특히 고위직의 부패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기관장의 솔선수범을 보장하는 제도·법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6. 베트남 중앙내무위에서는 공직자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고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직접 관리하시지만, 한국은 공직자 재산신고제도를 권익위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한국에서는 향후 이 업무를 반부패 정책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음

3. 권익위 측 향후 협력사항 논의 (이진희 서기관)

- 베트남 중앙내무위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반부패 정책 성과에 대해 잘 들었고, 다시 한번 권익위와 중앙내무위가 반부패 협력 MOU 연장 체결한 것을 기쁘게 생각함
 - 권익위는 앞으로도 베트남의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음
- 앞으로 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 시행해 온 공공재정환수법 도입 성과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부문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지속 공유와 함께 국가청렴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 부문에 대한 반부패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지속 협력해 나가겠음
-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 추진한 반부패 협력 활동을 UN반부패 협약 이행점검회의 등 국제회의 참석 시 모범적인 협력사례로서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기를 희망함
- 이 외에도 중앙내무위 측에서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안해주시기를 바라며, 올해 중앙내무위를 방문하여 대면으로 반부패 협력회의를 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고,
 - 내년에는 베트남 중앙내무위 측에서 한국에 방문하여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함

4. 중앙내무위 측 향후 협력사항 논의 (Nguyen Trong Giap 인사과 전문관)

○ 양 기관의 '22~'24 향후 협력방안으로 다음의 6가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 1) 한국의 반부패 정책 분야별 심층연구 수행
- 2) 권익위 및 권익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교류·협력 강화
- 3) 한국의 타 반부패업무 수행 기관의 기능, 임무, 권한, 조직구조 및 업무 관계, 권력통제 반부패 경험, 고위공직자 평가 기준, 청렴교육과 관련한 정보 공유
- 4) 베트남에서 반부패 세미나 개최 시 중앙내무위에 자문 및 기술지원
 - * 권익위가 많은 성과를 이룩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및 디지털 반부패 시스템 등 관련 기술지원
- 5) 양 기관의 국제세미나 및 교육프로그램 개최 시 대면·화상 참석
- 6) 코로나19 진정 국면에 따라 '23년에는 베트남 대표단이 권익위를 방문하여 양 기관의 자료와 반부패 경험 및 성과 공유

□ 활동 모습

국민권익위 - 중앙내무위 반부패 MOU 협력회의



양 기관 반부패 정책 활동 공유



3

국민권익위-감찰원 반부패 협력회의

□ 일 시 : '22. 11. 9.(수) 14:00~16:00

□ 장 소 : 베트남 감찰원 본부

□ 참 석

○ (우리측) 부패방지국장, 이진희 서기관, 조수연 사무관, 한은실 주무관, 현지통역사

○ (베트남측)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감찰원 관계자 10인

□ 목 적 : '16년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도입·시행 중인 베트남 감찰원의 시책평가 실시 현황 공유 및 '22년부터 시행 중인 한국의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 소개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1.9. (수)	14:00-14:40 (40분)	한국의 종합청렴도 평가제도 개요	이진희 서기관
	14:40-14:50 (10분)	휴식	
	14:50-15:30 (40분)	감찰원 반부패 정책 현황 공유	감찰원
	15:30-16:00 (30분)	질의응답	

※ 한-베트남어 순차 통역

□ **한국의 종합청렴도 정책 시행** (권익위 이진희 서기관)

○ 권익위는 반부패 법령을 기반으로 다양한 반부패 정책도 추진 중임

- 반부패 법령을 생활 속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 청렴교육·컨설팅과 평가,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처리와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공공·민간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지원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패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감사관 회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추진체계를 갖추고, 국가청렴도(CPI) 향상을 위한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한국의 국가 청렴도는 계속 개선되고 있음
 - TI가 발표하는 CPI가 최근 5년 지속 상승해, 올해 초 발표한 '21년도 CPI는 95년 측정 이후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했고, IPI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권익위는 청렴도 평가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는 작년에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올해부터 개편된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권익위는 2002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측정하는 청렴도 측정 제도와 각급 기관의 청렴 노력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였음
- 평가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별개로 운영되던 두 제도를 통합해 종합 평가 모형으로 개편하고, 세부 내용을 조정한 것임
-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 제도에 대해 우선 소개하겠음
- 먼저, 각급 공공기관별 청렴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청렴도 측정제도는 설문조사와 객관적인 부패사건 현황을 토대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측정하였음
 - 공공기관의 측정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과 그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 대상 설문조사에 기관에서 발생한 부패사건 현황을 종합해 기관별 청렴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매년 그 측정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왔음
 - 설문조사 방식은 보이지 않는 은밀한 부패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상 활용되는 방식으로, 여기에 부패공직자 징계 현황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완하는 방식임

-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1년간의 청렴정책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 베트남도 몇 년 전부터 시책평가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권익위는 매년 반부패 중점 추진 방향을 반영해 평가대상과 평가지표 등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공공기관은 계획에 따라 반부패 정책을 추진한 후 그 실적을 권익위에 제출함
 - 각 기관의 실적과 성과는 내·외부 평가단에 의해 기관별로 평가되어 그 결과가 대국민 발표됨
- 평가제도 개편은 작년에 평가 도입 20년을 맞아 그간 변화된 환경과 국민들의 반부패에 대한 높아진 눈높이를 반영하면서 각급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부패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작년에 국민, 전문가, 관계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 방향과 개편안을 발표하고, 올해 초에 올해 적용할 개편된 평가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 개편된 평가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종합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큰 방향이며,
 - 단순히 물리적으로 통합한 것이 아니라, 평가대상과 평가 모형, 평가 방식 등을 전면적으로 보완·개선하였음
- 올해부터 추진 중인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공직자가 체감하는 청렴수준인 청렴체감도, 공공기관별 반부패 정책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 통계를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영역으로 구성됨
 - 체감도는 기존의 청렴도 측정의 설문조사, 노력도는 기존의 시책평가, 부패실태는 기존의 청렴도 측정의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기본으로 발전시킨 형태임

- 우선 **청렴체감도**는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했던 업무 상대방과 그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로 측정함
- 개편을 통해 측정 항목을 재구성하고, 부패경험 항목을 감점화하는 방식으로 결과 점수 산정 방식도 개편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음
 - 금품 수수 등 전통적인 **부패행위**뿐 아니라, 소극행정, 직권남용, 공직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부당한 사익추구 등 **보다 넓은 개념**으로 구성되었음
- **청렴노력도** 평가에서 기존 시책평가에 비해 가장 달라진 점은 내부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기관에서 추진하는 **부패방지 정책의 효과성**을 직접 평가한 점수가 반영되는 부분임
 - 또, 기존 시책평가에 비해 핵심지표 위주로 평가지표를 간소화하고, 기초자치단체 등 시책평가를 받지 않았던 기관 고려한 **맞춤형 지표**를 설계했다는 점도 차이가 있음
- 마지막으로 **부패실태 영역**은 각급 기관의 부패공직자, 소극행정, 권력형 성비위 등에 대한 징계현황, 감사자료, 언론 보도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해 통계화한 **객관 지표**로,
 - 부패행위자 등의 직위나 부패금액, 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정량 산식과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해 기관별로 산정한 점수를 감점으로 반영하는 방식임
- 평가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평가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각종 행위들이 적발될 경우에는 감점, 등급하향 등 행위의 **경중에 따라 조치**가 취해짐
 - 권익위는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상시 제보창구 운영, 현지점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뢰도 저해행위를 예방하고 있음

-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공공기관 전체이며, 중앙·지방 행정기관은 물론 공기업이나 지방의회, 국공립 대학이나 공공의료기관 등 그 유형이 다양함
 - 권익위는 전체 공공기관 중 기관 유형과 성격, 규모나 영향력을 고려해 매년 평가 대상기관을 선정해 평가하고 있음
- 올해 평가대상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전체와 일부 규모와 영향력, 부패취약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직유관단체 등 573개 기관이며,
 - 작년까지 대부분 시책평가를 받지 않았던 기초자치단체도 전수로 올해 종합평가를 받게 되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경찰청과 별개로 시·도 경찰청에 대한 시범 평가도 실시됨
- 평가 결과는 언론 브리핑과 보도자료, 권익위 및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되며, 해당 공공기관에는 보다 세부적인 분석 결과 보고서를 제공해 다음 해 청렴정책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또, 청렴도 결과는 기재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도 반영되며, 우수 시책은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확산해 각급 기관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수한 기관은 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한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지원함
- 종합청렴도 개편을 통해 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의 실적과 성과가 직접 기관의 종합청렴도에 반영되면서 공공기관의 청렴역량을 집중 유도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음
 - 또,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청렴수준 정보가 한번에 국민들에게 공개되면서 국민들은 각급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청렴수준과 역량을 알 수 있게 되었음

- 지금까지 설명드린 종합청렴도 평가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부패 방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CPI 등 국가청렴도의 지속적 상승과 사회전반으로의 청렴문화 확산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해 가겠음

■ 질의응답

(감찰원 Phi Ngoc Tuyen 반부패국 부국장)

Q1. 평가제도의 모형 변화로 평가방식도 많이 바뀌었는지?

A1. 기존의 설문조사, 정량·정성 평가방식, 객관 자료 검토 등 평가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평가 영역별 가중치 등 변화된 부분이 있음

- 참고로 가중치 산정은 영역별 중요도에 대해 국민, 공공기관,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종합 결정하였음

Q2. 두 가지의 평가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투입인력 감소의 효과가 있는지?

A2. 기존의 평가제도를 통합함으로써 기존에 시책평가를 받지 않았던 기관을 청렴노력도 대상에 포함 평가하고, 정량·정성평가 및 합산 등의 작업으로 오히려 업무량은 더 많아진 상황임

(감찰원 Nguyen Van Thanh 반부패국 제2과 부과장)

Q3. 평가 제도 운영에 IT 기술을 활용하는지?

A3. '청렴체감도' 설문조사를 모바일과 온라인 등으로 실시하고 있음

(감찰원 Tran Trung Son 반부패국 제1과 과장)

Q4.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행정조직인지? 베트남에서는 자치제도 없이, 중앙의 지시를 받는 지방의 63개 성 인민위원회 조직으로 운영됨

A4 한국은 중앙행정기관과는 별도로 각 지역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라는 행정기관 조직이 존재함

Q5. 설문조사 시, 대면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는지?

A5. 이전에는 대면조사로 진행한 부분이 있으나, 대면조사는 부패수준을 측정하는데 응답자에게 많은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현재는 전화, 스마트폰 모바일, 이메일 조사만 진행하고 있음

(감찰원 Do Trung Kien 국제협력부 부국장)

Q6 행정기관, 교육청, 의회 등 종합청렴도 모든 대상기관에 적용하는 평가 지표가 다 같은 내용인지?

A6. 성격이 유사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공통된 모형을 기반으로 기관 규모 등에 따라 일부 맞춤형 노력도 지표를 설정하는 등 변형이 있으며, 성격이 다른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지방의회 기관 유형은 이와는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음

Q7. 내부조사 시 객관적인 답변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A7. 1) 답변자 정보 및 답변 내용에 대한 철저한 익명성 보장이 전제이므로 감사부서에서 답변자의 답변여부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며, 2)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기준 마련, 현지점검, 상시 제보창구 운영, 청렴도 설문항목에 제보 가능 문항 포함 등 신뢰도 저해행위를 엄격히 관리하는 노력을 통해 객관적 답변을 확보하고 있음

□ 베트남 감찰원 시책평가 현황 공유 (감찰원 Le Huy Tham 반부패부 제3과 과장)

- 베트남은 '05년 반부패법 제정 이후 부패 수준 측정을 반부패 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실행하고 있음
 - 부패 수준 측정은 부패 취약 부분을 진단하여 반부패 업무 실행의 효율성 제고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임
- 반부패 노력도 및 효과성 등을 측정하는 제도 시행 등을 노력해 왔으나 실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16년 권익위-UNDP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공유 사업을 통해 시책평가를 도입하게 되었음
- '16년부터 '19년까지 시책평가를 시범적으로 진행한 후 베트남 정책 환경에서 시행 효과가 입증되어 '18년 부패방지법에 반영되었고, 현재 63개 성 지방인민위원회를 대상으로 '21년부터 시책평가가 정식 시행 중임

- 베트남의 시책평가는 크게 2단계에 거쳐 진행되고 있으며, 1단계는 지방인민위원회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감찰원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2단계는 감찰원의 검토·확인을 거쳐 종합보고서 작성한 후 이를 총리에게 보고하는 방식임
- 시책평가 시행의 성과로는, 1) 시책평가 시행 사항을 정식으로 부패방지법에 반영한 사항, 2) '16년부터 매년 평가를 안정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점, 3) 정성평가로만 진행하던 방식에서 정량 평가를 도입한 사항, 4) 시책평가의 반부패 정책적 효과 인식이 확산된 점, 5) 앞으로 베트남 상황에 맞게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인 점, 6) 평가보고서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증 체계를 완성한 사항, 7) 앞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자원을 동원할 예정인 점, 8) IT 기술 적용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9) 기관장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평가를 지속 강화하고, 10) 현재 63개 성 지방인민위원회만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 시범적으로 중앙부처 3개 기관을 추가하였고, 향후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인 점 등이 있음
- 베트남에서 시책평가를 효과적으로 지속 시행할 수 있도록 권익위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응답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1. 어느 국가나 중앙정부부터 지방조직까지 부패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함
 - 베트남의 경우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인민위원회 단위부터 평가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평가단위 설정이 바람직하고, 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올해부터 중앙부처 평가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점차 평가기관을 확대하신다는 계획에 적극 찬성하는 의견임
2. 한국의 경우, 청렴도 및 시책평가 단위를 중앙정부부터 설계하여 어려움이 있었음

- 가령 각 부처별 소관업무가 다른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평가를 실행한다는 점이 각 피평가기관에 수용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음
 - 반면, 한국의 17개 광역 및 교육자치단체의 경우 업무가 유사하여 같은 평가 단위의 수용도는 높은 상황이었음
3. 부패수준에 대한 평가방식에 가장 바람직하거나 고정된 하나의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 국가별 처한 환경, 업무 특성, 전체 시스템에 맞춰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베트남은 1단계 각 63개 지방인민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반부패 성과를 발굴하고, 그 다음 2단계로 검찰원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평가한다고 했는데, 이는 평가의 목적이 각 기관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닌, 각 기관의 개선 노력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평가의 목적에 부합한 평가방식이라고 생각함
 - 이렇게 63개 지방인민위원회가 보다 활발히 부패방지 활동을 펼치면 베트남의 전체적인 반부패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함
 - 베트남에서 향후 평가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검찰원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권익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음
4. 그동안 국가별 부패수준 평가로서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결과가 거의 유일한 자료로 사용되었으나, 현재 국제적으로도 평가방식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
- UN, OECD 등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시책평가 등의 평가제도, 베트남의 평가 경험 등이 국제적인 논의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5. 그동안, 베트남 검찰원에서 시책평가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이를 부패방지법에 적용하신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도발전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오늘 유익한 자료를 발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익위 이진희 서기관)

- Q1. 일차적으로 각 지방인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한 후 검찰원에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2단계 평가 방식이 인상깊었음

- 도출된 평가 결과인 종합보고서를 등급을 나눠 대국민 발표하시거나 각 지방정부에 피드백을 주는 등 결과활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 또한, 시책평가에서 IT 기술 활용을 계획중이라고 하셨는지,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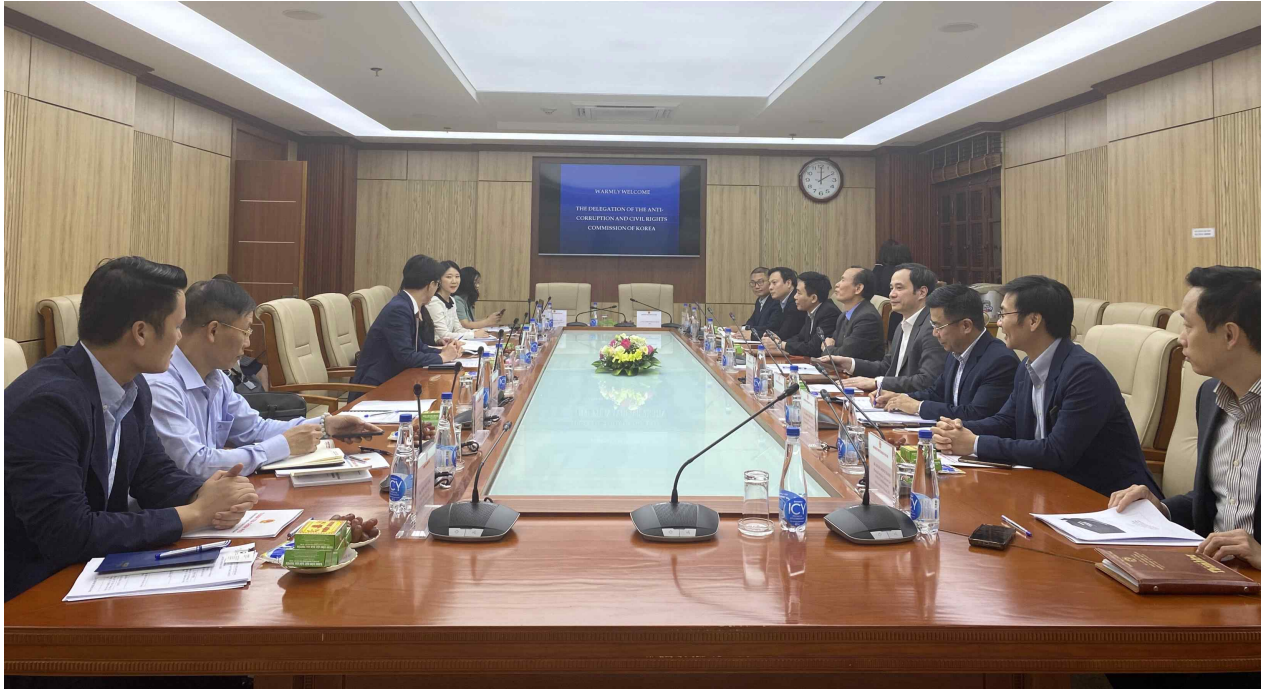
(감찰원 Le Huy Tham 반부패부 제3과 과장)

A1. 베트남에서도 효과적인 시책평가 적용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고, 그 결과, 베트남은 한국과 정치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평가 시행을 위해 2단계로 진행함

- 가령 감찰원이 직권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기에 63개 지방인민위원회의 장과 지위가 비슷하기에 상하 평가 시행이 어려웠고,
- 이에 일단 각 지방인민위의 반부패 정책 성과 및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1단계 파악을 하고,
- 2단계에서 감찰원이 지방인민위원회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이 객관적으로 설정되었는지, 평가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함
- 감찰원의 평가기준은 전문가 및 지방인민위원회 참여로 의견수렴하여 설정되었으며, 이러한 2단계 평가방식으로 지방인민위원회와 감찰원 간의 협조가 매우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음
- 2단계 평가 방식 및 업무가 유사한 지방인민위원회를 평가단위로 시책 평가를 실시하여 지난 5년 동안 63개 지방인민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불만이 없었음
- 최종 도출된 결과물인 종합보고서에 개선사항 등을 담아 각 지방인민위원회에 송부 및 총리께 보고하였고, 시범기간 이후인 '18년부터는 그 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음
- 주관적인 평가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IT 기술 활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권익위에서 활용하고 있는 IT 기술 활용 방안을 공유 받기를 희망함

□ 활동 모습

국민권익위 - 감찰원 반부패 협력회의



감찰원 및 국민권익위 대표단 기념사진 촬영



4

하남성 지방내무위 방문 및 반부패 자문

- ☐ 일 시 : '22. 11. 10.(목) 10:00~16:00
- ☐ 장 소 : 하남성 지방내무위원회
- ☐ 참 석
 - (우리측) 부패방지국장, 이진희 서기관, 조수연 사무관, 한은실 주무관, 현지통역사
 - (베트남측) 베트남 중앙내무위·하남성 지방내무위 관계자 10인
- ☐ 목 적 : 지방내무위 반부패 정책 추진 경과 공유를 통해 베트남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 반부패 추진 공조체계 이해
- ☐ 베트남 하남성과 한국과의 협력 사항 공유 (Dao Dinh Tung 위원장)
 - 하남성은 다수의 한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이며, 저도 지난 8월 한국에서 개최된 베트남 투자 유치 세미나에 참석한 바 있음
 - '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기업이 하남성에 투자한 건수는 148건이며, 투자 규모는 약 17억불에 달함
 - 한국의 주된 투자분야는 전자부품, 자동차, 플라스틱 생산 등이며, 한국 투자를 통해 개발된 토지 면적은 225헥타르임
 - 투자된 148개 프로젝트 중 현재 131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 하남성에 위치한 한국기업에 약 3만 6천명의 노동자가 근로하고 있으며, 약 660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음
 - 한국기업은 투자법 등 베트남의 법률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면서 사업을 진행중이며,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하남성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기업에 우대정책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한국 및 일본 기업의 투자를 지속 유치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 귀국 시 한국 기업들에 하남성을 홍보해주시기를 바램

□ **베트남 하남성 지방내무위 반부패 정책 추진 현황 공유**
(Ngo Van Khien 반부패국장)

- 하남성의 부패방지 활동에 대해 공유드리기에 앞서, 하남성 지방내무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 하남성 지방내무위는 6개 현 단위 지방조직, 2개 관련 부처, 2개 수사기관까지 총 10개 기관을 관리하고 있음
 - 하남성 지방내무위는 중대사건 처리 등 중앙내무위에서 결정한 모든 반부패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베트남의 정치안정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 지금까지 하남성 지방내무위가 달성한 반부패 성과로는,
 - 1) 하남성 지방내무위는 하남성의 상황에 맞게 중앙내무위의 반부패 지도사항을 충실히 이행중에 있음
 - 부패방지는 하남성에서 매우 중요한 목표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관련 기관과 지속적 협력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반부패 제도 완비를 위해 지방조직에서도 지속적으로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였음
 - 부패사건 적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음
 - 공직자 자산신고 등의 행동강령 준수, 지속 인사조정 등을 통한 행정개혁 실시, 기관 활동을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등 베트남 중앙당에서 결정한 모든 기준을 잘 지키고 있음
 - 2) 부패방지과 관련한 지방내무위의 활동 및 정보를 언론에 공개하여 반부패 정책 홍보에 힘쓰고 있음
 - 대학교 등에서 부패방지과 관련한 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새로운 법률, 규정 교육 등을 통해 기관장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3) 규정에 따라 사건, 사고를 엄정히 처리하고 있음

- '22년 253개 사건 및 총 1,380개 기관을 조사하였고, 대부분 건설, 부동산 분야의 313개의 기관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음
 - 총 27조동(한화 1.3조원)의 위반금액을 적발하여 그 중 8조동(한화 4천억원)을 회수하였고, 총 2억 4천 3백만동(한화 1천만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으며, 19명이 처벌되었음
 - 현재 6개의 사건이 조사 진행중이며, 관련한 위반금액은 6조동(한화 3천억원)이고, 이 중 3억동(한화 1천5백만원)은 회수 완료됨
- 4) 67호 의정서에 따라 부패방지뿐 아니라 '부정'기능이 추가되어 부정·부패방지업무를 수행중이며, 하남성 서기장이 주재하는 2개의 반부패 회의를 진행하였음
- 회의 결과는 하남성의 모든 관련 기관에 전달되었으며, '부정' 관련 호텔 프로젝트 위반 사항, 하남성 투자성의 위반사항, 하남성 토지청의 토지 불법사용, 과사지역 토지관리법 위반 사항 등의 6개의 사건을 처리하였음
- 지금까지 하남성에서 추진한 반부패 정책 경험과 관련한 반성 및 보완 사항으로는,
- 1)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정치적 결심이 있어야 하고, 정치적 결심을 현실화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에서는 중앙당에서 지시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함
 - 2) 특히 지방 고위공직자의 술선수범이 필요함
 - 3) 부정부패는 외세의 침략이 아닌, 내세의 침략이라 생각하여 반부패 업무를 우선순위에 두고, 반부패 업무는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려운 임무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4) 베트남 중앙당 정치국에서 발행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함
 - 5) 부패사건을 강력히 처리해야 하고, 동시에 부패가 발생할 수 없도록 강력한 사전차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6)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발전도 필요함
- 7) 부패방지 활동 중 예산낭비 문제 해결에도 집중해야 함
- 8) 반부패 관련 사회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해 성내 주민들 대상으로 지속적인 반부패 교육이 필요함
- 9) 하남성 지방위원회, 중앙내무위, 하남성의 모든 민간 기업, 성내 주민들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므로 부정부패 업무 관련하여 지속 협력해야 함
- 10) 하남성 지방내무위는 하남성의 반부패 활동을 총괄하고 있어 국제규범 지속 공유 및 청렴교육 등을 통해 지방내무위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 하남성의 반부패 정책 관련한 향후 추진 방향으로,

- 1) 청렴문화 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반부패교육 실시
- 2) 공직자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반부패 인식 제고
- 3) 부패방지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중앙당, 정부의 지시를 철저히 준수하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법률 개정에도 기여 노력
- 4) 부패사건 관리 감독을 강력히 시행하여 부패사건을 공정히 처리하는 동시에 사전 차단 부패예방 시스템 마련
- 6) 기관장의 역할, 책임 강화 및 반부패 정책 담당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역량 강화
- 7) 부패행위 이력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속 인사조정, 선물 및 현금수수 감독,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감독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재조사 실시
- 8) 선출직, 사법기관 대상으로도 시민들의 체계적인 권력 통제 실시
- 9) 공직자 자산신고 실시 등 기관 정보 공개 실시
- 10)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조직에 대해 부패사건 발생 여부 철저한 감시 수행

■ 질의응답

(Q.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 A. 하남성 지방내무위 Dao Dinh Tung 위원장)

1. 하남성의 부패방지 활동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으며, 말씀하신 내용 중 몇가지 인상깊었던 사항이 있음

- 부정부패는 외세침략이 아닌, 내세침략이며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부패가 발생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에 적극 공감함
- 부패사건에 대한 엄정한 적발, 처벌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방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에도 동의함

2. 한국은 국민권익위의 지방조직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중앙조직만 있음

- 따라서 하남성 내무위에서 중앙당의 법과 제도를 지역사회에 적용, 실행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활동 사항에 대해서 매우 흥미롭게 들었음

Q1. 말씀하신 내용 중, 부패방지 업무 수행 관련하여 한국과 다른 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함

- 한국은 부패관련하여 기관을 조사할 때 반드시 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나, 하남성 내무위에서는 기관을 포괄적으로 조사, 수사한다는 인상을 받았음
- 이에, 지방내무위는 조사의 범위 및 수사 권한이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
- 또한, 지방내무위는 소수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 및 수사를 수행할 때, 지역단위의 수사기관과 협업하여 진행하는지?

A1. 하남성 지방내무위는 개편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며, 여러 채널을 통해 행위위반 등 신고를 접수하고 있음

- 신고뿐 아니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형사 관련 위반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으로 이관할 뿐, 지방 내무위에 직접 수사권한은 없음

Q2. 지난 사건, 사고처리 과정에서 27조동을 적발했다는 언급에서, 베트남에서는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정부예산을 회수하거나 예산절감에 기여했을 때 신고자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이 주어지는지?

- 한국의 경우, 사안에 따라 정부예산을 회수하거나 예산절감에 기여한 경우 그 액수의 최고 30%까지 보상을 실행하고 있음

A2. 중앙당에서 발행한 문서에 따라 부패자산 회수는 하남성 지방내무위에서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분야로, 매해 적발되어 회수되는 금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 신고자 보상과 관련해서는 베트남의 보상, 포상 관련 규정은 있으나 별도의 구체적으로 규정된 액수는 없음

Q3. 베트남에서 부정부패 신고자에 대해 어떤 식의 보호를 수행하는지?

- 참고로 한국은 1) 신고자 신분을 노출한 자에게는 최대 5년의 처벌 등 신고자 신분보장, 2) 신고자 및 신고자의 가족 신변이 위협받는 상황일 때에는 경찰과 협력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는 신변보호, 3) 신고자의 조직에서 신고자를 해임, 파면 시 다시 원상회복하도록 권고하고, 신고자에 불이익을 조치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징역을 처벌하는 등 다양한 신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 4) 수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밝혀질 시에는 신고자의 부패행위 가담 사항은 처벌 감경하는 등으로 신고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음

A3.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하남성 지방내무위를 포함한 모든 지방내무위는 신고자의 신원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신고자 보호 조치를 실시함

(Q. 권익위 이진희 서기관 - A. 하남성 지방내무위 Ngo Van Khien 반부패국장)

Q4. 하남성 지방내무위에서 수행하고 있는 반부패 노력 중, 학교나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에 관련된 사항이 있었는데, 이는 정규 교육 과정에 반영되어 실시되고 있는 사항인지?

A4. 베트남은 모든 법률을 공개·홍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매년 반부패 법률 관련해서도 청렴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음

Q5. '건설이나 부동산 분야'에서 적발이 많이 되는 것으로 보아 부패에 취약한 분야가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A5. 말씀하신 대로 토지 등 인프라 개발은 하남성 지역의 부패취약분야임

- 따라서 중앙내무위 및 중앙당의 협력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모든 건설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Q. 하남성 지방내무위 Dao Dinh Tung 위원장 – A.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Q6. 권익위는 현재 지방조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지방의 부패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A6. 어제 베트남 감찰원을 방문하여 베트남에서는 63개 성 인민위원회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공유받았는데,

- 한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매년 반부패 추진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여 각 지자체에서 1년 동안 추진한 반부패 활동을 평가 및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음
- 따라서, 권익위 자체의 지방조직은 없으나, 각 지자체 내 감사실 등 감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반부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Q7. 한국 전역의 지방 부패사건은 권익위에서는 어떻게 수집, 처리하는지?

A7.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지역단위에 구분을 두지 않고, 전국의 신고사건을 접수하고 있으며, 권익위에서 직접 조사하는 권한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음

Q8. 권익위의 직원 수는 얼마나 되고, 정확히 어떤 반부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A8. 전체 권익위 직원 수는 약 6백여명이나, 이는 민원처리 업무, 행정심판 업무, 제도개선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 수임

- 부패방지 정책을 소관하는 부패방지국 직원 수는 약 60여명으로,
1)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2) 반부패 정책 및 제도 이행을 평가하고, 3)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이 각 기관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심사보호국의 직원은 약 1백여명으로, 각종 부패신고, 공익신고, 재정누수 신고 등을 접수, 확인, 처리하고 신고자 보호·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활동 모습

국민권익위 - 하남성 지방내무위 협력회의



하남성 지방내무위 및 국민권익위 대표단 기념사진 촬영



Ⅲ 평가 및 향후 계획

□ 한-베트남 반부패 협력관계 강화

- 한국과 베트남은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가국이며,
 - '22년 10월 외교장관 회의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가 격상되는 등 베트남과의 반부패 협력활동을 강화할 필요
- * 베트남 최고 수준의 대외협력관계로, 현재 베트남과 이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중국, 인도, 러시아 3개국뿐임
- 베트남 최고지도자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 반부패 총괄기관의 권한, 한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등 대한민국의 반부패 정책 공유에 유리한 환경
- 2023년 계획 중인 베트남 대표단의 위원회 방문 시 베트남에서 관심을 보인 공공재정환수법, 디지털 반부패 시스템 등 베트남측 관심 정책 중심으로 연수 실시
- 기 전수된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가 베트남 중앙정부까지 성공적으로 확대 실행될 수 있도록 자문 등 컨설팅 지속 지원

□ 베트남 측 요청사항 후속조치 이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종합청렴도 세부자료, 반부패 정책 시행에서 IT 기술 활용방안 자료 등을 요청하여 관련 영문 정책자료 제공
- 베트남의 권익위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간담회 개최 등 요청 시 해당 기관에 의사 전달 및 협력회의 개최 협조
- 2023년 한-베트남 반부패 협력회의 개최 시 반영 추진

1.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감찰원 개황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CCIA, The Central Commission for Internal Affairs)

- 2013년 2월 효과적인 반부패 업무 수행을 위해 기존 부패방지중앙지도 위원회의 지위 및 기능강화를 위해 개정된 부패방지법에 의거 설립

※ 중앙내무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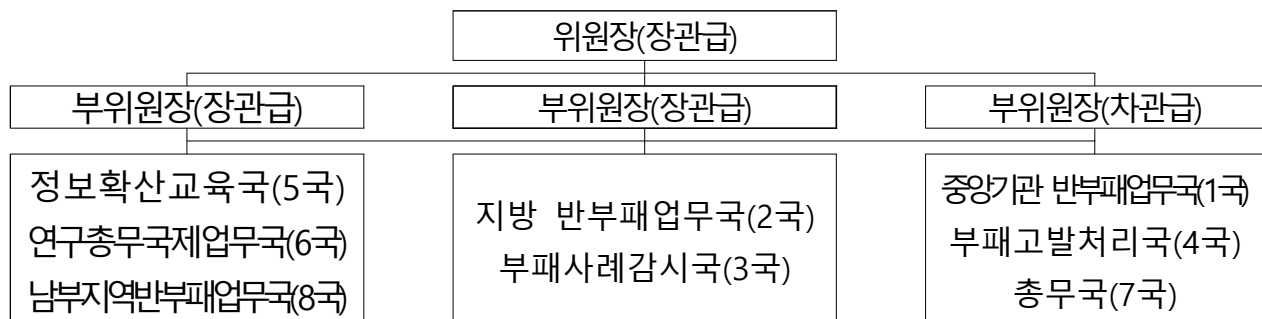
- 설립근거 : 베트남 부패방지법('13.2월 개정)
- 구성 : 당소속 기관으로 위원장은 Phan Dinh Trac('16.2월~), 부위원장은 Pham Anh Tuan을 포함한 5명, 그 밖에 10명의 위원(총 16명)
- 권한 : 반부패법 이행 감독·촉구, 공공분야 중대·복잡한 부패사건의 기소·판결에 대한 조사·감사·감독, 중대 부패 사건 기소 및 판결 감사, 비위 공직자의 직위해제 등
- * 공산당 소속으로 행정, 입법, 사법기능 보유

- 부패방지법상 부패총괄기구로, 부패방지 법규 및 제재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반부패 관련 기구 및 법원, 민원신고 및 부패신고 처리 관련 기관의 활동 조사·감독·감사·조정, 총리 직속 기관 기관장 중 부패혐의 인물 처리 관련 자문 지원, 지방내무위원회 활동 감독·지원 등의 역할 수행

※ 권한

1. 관계기관에 대해 부패관련 정보 요구, 2.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보상(칭찬) 요구
3.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 시 관련 기관·기관의 관계자 소환

- 위원회의 구성 ※ 직원: 약 600명(위원회(80명)+ 지방 위원회(63개 지역 또는 도시, 각 10~15명))



베트남 감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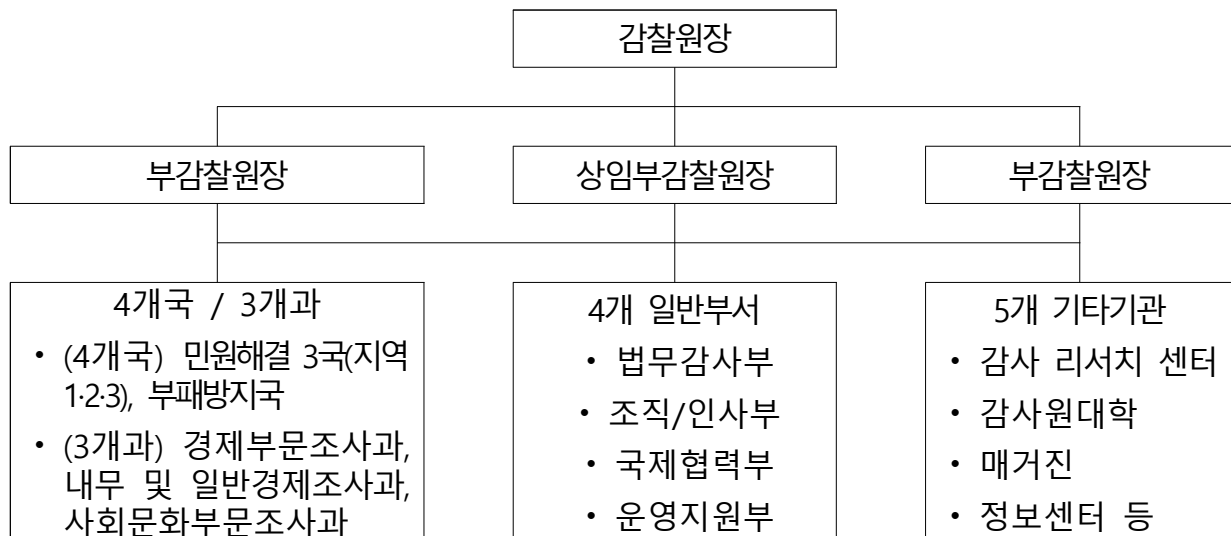
(GI, Government Inspectorate)

- 고 호치민 대통령의 명령 제 64호/SL(1945년 11월 23일 자)에 의해 특별 감사 위원회 (Special Inspection Board)가 설립, 베트남의 국가 감사 체계가 성립되었으며 동 위원회가 현 베트남 감찰원의 전신이라 할 수 있음

※ 주요 법적 근거

1. 감사법 (Law on Inspection, 2004)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 (1998), 민원처리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완에 관한 법(2004)
 3.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한 법 (2006)
 4. 정부 사찰단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정부 시행령 제 55호 (2005.4.25)
- 장관급 기관으로 감사와 민원 해결 및 부패 방지에 관한 국정 기능을 수행함. 또한, 관련법 조항에 따라 감사, 민원 해결, 부패 방지 및 척결을 위한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음.
 - 부패방지 활동은 부패방지국에서에서 수행중이며 부패방지 계획 수립, 부패방지 활동 지원·감독, 관련기관 감사, 중대 부패사건 조사, 관련 정보수집 등의 기능 수행
 - 베트남 부패방지법령 및 UN,반부패협약에 명시된 규정과의 양립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국가기관 및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를 수행

※ 5개과 약 4백명 구성(반부패 계획 수립 1과 국제협력 1과 지역 지도·감독 3개과(북·중·남부))



2. 한-베트남 반부패 MOU 주요 내용

가 추진 배경

-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기법을 배우고 상호협력을 확대하려는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CSAC) 측의 요청('08.9월)에 따라,
 -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 홍보, 외교적 기반확대, 아태지역 반부패 협력 선도국으로서의 입지 등을 고려, MOU 체결('10.2.3., 하노이)
-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 사무처가 조직개편에 의해 중앙내무 위원회로 변경('13.2월)됨에 따라,
 - 기존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와의 협력 MOU를 승계하여 중앙내 무위원회와 MOU 연장 체결('13.5.9., 서면)
- 베트남 측 요청에 따라 권익위-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간 MOU 연장 체결('16.10.14., 서울)

※ 위원장, 베트남 중앙내무위 판 안 투안(Pham Anh Tuan) 부위원장 간 서명

부패의 예방·척결에 있어서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간 양해각서 연장('16.10.14.)

- 체결기관 :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ACRC),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CCIA)
- 기간 : 2년(2016.10월 ~ 2018.10월)
- 목 적 : 양 기관 간 협력 증진을 통한 부패 예방 및 척결 역량 강화
- 주요 협력 활동
 - 양국 간 부패방지 정책·경험 공유 및 관련 단기연수 실시
 - 반부패 정책공유를 위한 심포지엄·세미나 개최 및 참석
 - 관련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협력 활동의 추진상황 및 성과 홍보

□ 추진 현황

○ 베트남 공무원 대상 반부패 연수

- 1차('10.6.7~11, 서울) : 부패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공직자 재산신고

※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 직원 5명 참석

- ※ 이후 베트남은 내부비리고발자에 대한 보상 법안을 마련, 내부비리를 고발한 88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고발자에 대한 보호책 마련 추진
- 2차('11.6.27~29, 서울) :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방지 제도개선 (건설·건축분야 사례 중심), 국가청렴도 향상방안, 토지분야 반 부패정책 (보상제도 중심), 한국의 UN반부패협약 이행 경험
- ※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 직원 5명 참석
- 3차('12.7.23~27, 서울) : 반부패법과 규제(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등), 부패사건의 조사 및 처리, 조달분야 부패예방
- ※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 직원 6명 참석
- 4차('13.9.9~11, 서울) : 부패영향평가, 청렴도측정,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 ※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직원 3명 참석
- 5차('16.10.14, 서울) :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 ※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직원 3명 참석
- 6차('17.3.21, 3.28, 세종) : 청탁금지법, 청렴교육 등
- ※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직원 19명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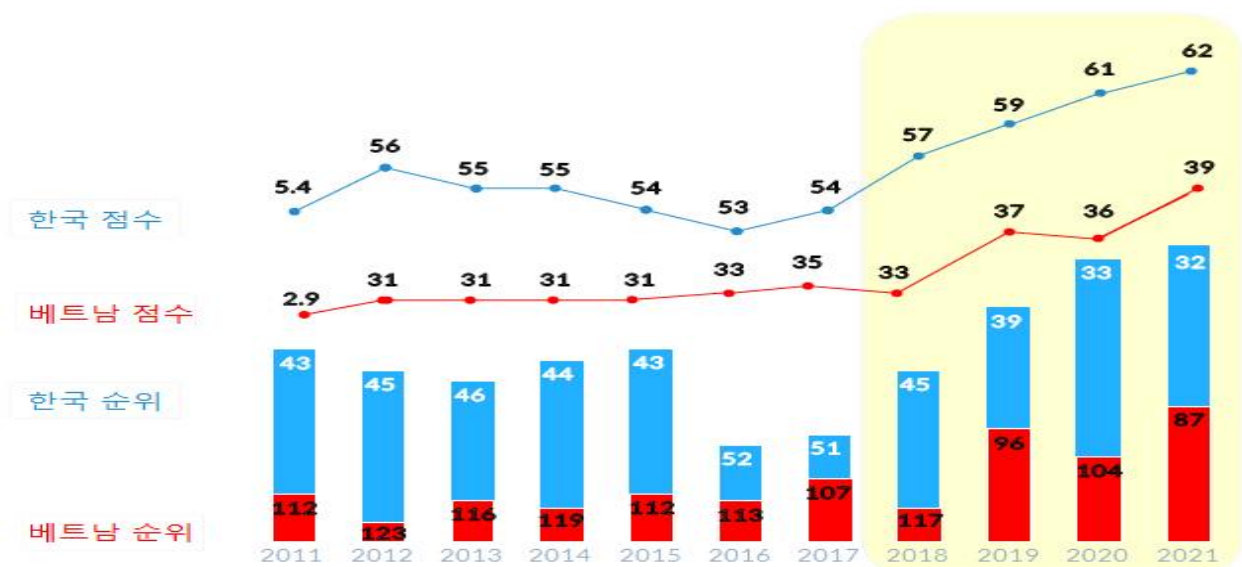
○ 기타 협력활동

- 베트남 「부패평가기준 워크숍」 참석('10.6.23, 하노이)
 - ※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 주제 발표
- 베트남 공무원단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10.5.10/10.25, 서울)
- 2010년 협력사업 이행 결과보고서 교환('11.3.3/4.7)
- 한-베트남 협력회의 및 청렴도평가 세미나('11.9.7~9, 하노이)
- 베트남 「신고자보호 워크숍」 참석('11.11.3, 하노이)
 - ※ '한국의 신고자 보호제도 - 성과와 도전' 주제 발표
- 2011년 협력사업 이행 결과보고서 교환('12.3.27/4.11)
- 베트남 공무원단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12.7.23, 서울)
- 한-베트남 협력회의(이행성과 평가, 협력방향 논의)('12.10.25, 하노이)
- 베트남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CSCA) 사무처가 중앙내무위원회(CCIA)로 개편('13.2.1)

-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CCIA)와 MOU 연장 합의('13.5.9)
- 한-베트남 협력회의(이행성과 평가, 협력방향 논의)('14.11.13, 하노이)
- 한-베트남 협력회의(이행성과 평가, 협력방향 논의)('16.10.14, 서울)
- 한-베트남 협력회의(이행성과 평가, 협력방향 논의)('17.3.17, 하노이)
- 권익위-UNDP 공동 베트남 공무원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연수('17.10.24, 세종)
※ 베트남 검찰원 외 중앙내무위, 총리실 등 관계기관 8명 참석
- 한-베트남 협력회의(이행성과 평가, 협력방향 논의)('17.11.29, 하노이)
-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CCIA)와 MOU 연장 합의('18.10.29)
- 한-베트남 옴부즈만 협력회의('19.6.4, 하노이·호치민)
- 한-베트남 반부패 협력회의('19.12.16, 하노이)
- IACC 워크숍 부패방지 시책평가 도입협약 및 향후 계획 공유('20.12.2.)
- 한-베트남 반부패 협력회의('21.12.1., 영상)

□ 한-베트남 CPI 변동 추이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한국	점수	5.4점	56점	55점	55점	54점	53점	54점	57점	59점	61점	62점
	순위	43위	45위	46위	44위	43위	52위	51위	45위	39위	33위	32위
베트남	점수	2.9점	31점	31점	31점	31점	33점	35점	33점	37점	36점	39점
	순위	112위	123위	116위	119위	112위	113위	107위	117위	96위	104위	87위



부패의 예방·척결에 있어서의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간 양해각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부패의 제거와 예방에 있어 기술협력과 부패예방·척결 활동의 효과적인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등과 상호이익에 기초하여 각 당사국의 일반적인 법률과 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호 협력하는데 동의한다.

제1조: 일반조항(목적)

양 당사자는 반부패에 관한 전략·정책의 개선과 시스템개발, 정보교환에 있어 각자의 역량과 제도적 기반을 촉진하고,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는데 동의한다.

제2조: 협력활동

당사자의 가용예산과 인력, 각 당사자 자국법령의 틀 내에서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부패방지 분야에 있어서 양자 간의 협력증진을 장려하고 기여한다.

1. 양 당사자는 (각국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반부패에 관련한 정보, 문서, 정기간행물 등을 교환하고, 부패의 예방과 척결방지에 있어 경험을 교환한다.
2. 부패방지 분야에 있어 각국에서 심포지엄, 포럼,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참여한다.
3. 부패방지 분야에서 경험의 공유, 전문기법의 개선, 선진화된 과학적 기법의 접근·적용 등의 분야에서 직원연수 등을 포함한 각국 대표단의 교환을 실시한다. 대표단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나, 이것은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의 법률과 규칙에 따라 국제 반부패기구, 관련 학술기관, 민간단체에 양해각서의 이행현황 및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5. 필요한 경우, 양 당사국은 부패의 예방과 척결과 방지와 관련된 다른 협력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정보의 보안

양 당사자는 협력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의 보안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양 당사자는 각국의 법률과 규칙이 허용하고 상대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획득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조: 개정 및 보완

1.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 상호합의에 의해 검토, 개정·보완한다.
2. 개정안은 서면으로 작성되며, 당사국간 합의한 날짜에 효력을 발생시킨다.

제5조: 실무적 사항

1. 양해각서의 이행 및 협력 프로그램의 제안·추진을 검토하기 위해 공동 위원회 회의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각 당사국에서 번갈아 개최한다.
2. 양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각각 연락책임부서를 지정한다. 연락책임부서는 본 양해각서 이행의 조정과 추진을 담당한다.
3.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연락책임부서는 국제교류담당관실이고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의 연락책임부서는 인사과이다. 연락책임부서의 변경이 있을 시 상대 당사자에 통보해야 하고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뤄진다.

제6조: 발효 및 종료

1. 본 양해각서는 서명일부터 효력이 있으며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본 양해각서 종료 3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2년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2. 본 양해각서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양해각서 종료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할 될 수 있다.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본 양해각서 효력은 종료된다.
3. 본 양해각서 효력의 종료는 본 양해각서가 종료되기 이전에 양 당사자에 의해 동의된 프로그램과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양해각서는 2016년 10월 ____일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작성하여 2부씩 서울 및 하노이에서 서명되었다. 이 2부는 동등하게 진본이다. 한국어와 베트남어간에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영어 본이 해석의 기준이 된다.